

【 11 】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5. 19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른  
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기구의 협의회 회원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요소 및 인원 변경 (안 제5조 제1항)
- 협의회에서 예산편성 제출기간 및 군수 승인기간을 변경 (안 제8조 제3항)

---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각 리동에서 선출한 100인”을 “각리에서 선출한 30인”으로 하고, “12인”  
을 “8인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제3호중 “12인”을 “5인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3항중 “60일”을 “30일”로 “30일”을 “15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--

신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구) ①협의회에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 ② - ④ (생략)	제5조 (기구) 각리에서 선출한 30인 8인 ----- ----- ----- ② -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임원) ① (생략) 1. -2. (생략) 3. 운영위원 12인이내 4. (생략) ② - ④ (생략)	제6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-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5인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-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재정) ① - ② (생략) ③협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8조(재정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30일 ----- ----- ----- 15일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
## 【 12 】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견

발의년월일 : 1994. 5. 27.

발 의 자 : 권선안의원외 1인